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27 선고 2022가단50447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9.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. 2. 17. 접수 제27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현종

별지